##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96

발의연월일: 2021. 3. 3.

발 의 자: 오기형 · 김정호 · 김주영

심상정 · 양경숙 · 어기구

이수진・이용우・홍기원

홍영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함)는 1950년대 창설 이후 자립을 위한 재정마련을 위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음.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는 2019년 말 현재 총 자산가액 약 7,500억 원에 달하 는 자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훈기금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매년 보훈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2018·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 결과 재향군인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년 연속하여 의견을 거절당하였는바, 재향군인회의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이에 관하여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

이 조사·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 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 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안 제16조의2).
- 나.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안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 다. 재향군인회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 감사를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안 제16조의3 제3항).
- 라.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안 제16조의3제4항).

- 마.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결산승인 신청 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만약 감사보고서에 따른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결산을 승인하여서는 안 됨(안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
- 바.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결산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고,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3항).
- 사.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16조의4제4항).
- 아.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법률 제 호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회계)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한다.
- 제16조의3(회계감사)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향군인회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를 받아야 한다.
  - ② 회장은 재향군인회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③ 재향군인회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로 하여금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사보고서의 작성,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결산승인 등) ①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호에 따른 결산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때에는 재 향군인회의 결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결산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고,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해임은 국가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에 그 사정을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될 때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직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및 제18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6조의2(회계) 재향군인회의 회
	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한다.
<u>&lt;신 설&gt;</u>	제16조의3(회계감사) ① 재향군인
	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
	표를 작성하여 재향군인회로부
	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
	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u>&lt;신 설&gt;</u>	② 회장은 재향군인회의 재무
	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u>&lt;신 설&gt;</u>	③ 재향군인회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국가
	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로 하여
	금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속
	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감사
	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u>할 수 있다.</u>
<u>&lt;신 설&gt;</u>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l

<신 설>

<신 설>

<신 설>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사보고서의 작성,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결산승인 등) ① 재향 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총 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16조의3제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 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10조제2호에 따른 결산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신 설>

<신 설>

<신 설>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 정인 때에는 재향군인회의 결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결산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이유를 공고하고,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고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① 국가보훈 처장은 재향군인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 임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신 설>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 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 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은 국가 보훈처장이 재향군인회에 그 사정을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 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 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 나 회계 부정, 횡령, 배임수재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 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원 해

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
구기간 중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재향군인
회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
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
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직무집행정지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